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03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서명옥 · 김미애 · 이종배
김기웅 · 엄태영 · 배준영
서범수 · 권영세 · 이현승
강승규 · 김정재 · 김용태
강명구 · 조은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 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들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수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피의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

주요내용

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고, 가해자는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3항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11(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또한 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5조의11(수사심의위원회) ①</u> <u>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u> <u>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u> <u>여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u> <u>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u> <u>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u>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u> <u>무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u> <u>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u>제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u> <u>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u>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u> <u>한 법률」 제2조, 「가정폭력</u> <u>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u> <u>법」 제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u> <u>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u> <u>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u> <u>수 있다. 다만, 조사·수사가</u> <u>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u> <u>사건관계인 또한 심의위원회를</u> <u>신청할 수 있다.</u>